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6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 의 자:이훈기·주철현·권향엽

김태년 • 이재관 • 김태선

김용만 · 김영배 · 박민규

김정호 • 이재강 • 김문수

박희승 • 이수진 • 위성락

정을호 · 정진욱 · 신장식

김교흥 • 황정아 • 박지혜

조인철 • 박해철 • 강준현

박홍배 • 김 현 • 문진석

의원(2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

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신고의 처리) ① (생 략)	제14조(신고의 처리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	2		
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			
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			
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			
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		
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, 그			
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			
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그 신고가 이 법</u>		
	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		
	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		
	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여		
	<u>서는 아니 된다.</u>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